####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 ELS·DLS·ELB·DLB에 대한 상품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 ofia.or.kr)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1. 투자판단시 <mark>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mark> 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u>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u> 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 면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 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기 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 5. 발행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회사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삼성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19년 01월 31일, 한국신용평가)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6. 투자금은 법적으로 <u>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회사의 고</u>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 7. 동 파생결합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u>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u>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회사에게 중도상환 요청 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

달할 수 있으므로, <mark>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mark>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 동 파생결합증권은 숙려제도 대상 투자자(만70세이상 고령투자자, 투자성향 부적합투자자)의 투자유의 상품으로 지정된 금융 상품입니다. 특별히 더 유의하셔서 투자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 9. 동 파생결합증권은 <u>만 70세 이상 고령투자자 및 부적합투자자에</u> 게 상품판매 시 전 과정을 녹취 및 보관하고고객요청시 제공토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상품판매가 불가 한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종목명: 삼성증권 제23212회 주가연계증권(원금비보장형) ]

※ 본 증권은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이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투자에 유의바랍니다.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1. 공모개요

#### (1) 용어의 정의

| 항 목       | 내 용   |
|-----------|---|
| 1) 거래소    |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아래 각 거래소를 의미함.<br>EUROSTOXX50: Eurex Exchange Deutschland 또는 그 승계기관<br>NKY225: 동경증권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br>S&P500: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또는 그 승<br>계기관    |
| 2) 관련 거래소 |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이 거래되는 아래 각 거래소를 의미함. EUROSTOXX50: Eurex Exchange Deutschland 또는 그 승계기관 NKY225: 오사카증권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S&P500: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

| 항 목          | 내 용  |
|--------------|--|
| 3) 거래소영업일    |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모두 정규시장 개장을 한 날   |
| 4) 영업일       |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의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br>하는 날  |
| 5) 기초자산 산출기관 |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하는 아래 기관을 의미함. EUROSTOXX50: 스톡스 사(Stoxx Limited) 또는 그 승계기관 NKY225: 일본경제신문사 또는 그 승계기관 S&P500: 미국 스탠다드앤푸어스 사(Standard & Poor's) 또는 그 승계기관   |
| 6) 계산대리인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7) 시장교란사유    | (¬) 기초자산가격의 산정, 공표 또는 통신상 오류가 발생한 경우  (ㄴ)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정규개장시간동안 개장하지 못한 경우  (ㄷ)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 이전 또는 이후 1시간 이내의 어느 시점에 (i)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 기초자산 관련 선물 또는 옵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 또는 (ii)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의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 거래 또는 관련거 래소에서의 기초자산 관련 선물, 옵션 거래에 참여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계산대리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 ※ 위 내용은 상· 하한가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  (ㄹ)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하고, 그러한 폐장사실이 실제 폐장시간 또는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에서의 거래체결을 위한 호가접수마감시간 중 이른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ㅁ) 계산대리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항   | 목              | 내 용  |  |  |  |  |
|---|----------------|--|--|--|--|--|
| 종목명<br>기초자산<br>모 집 총 액  |                | 삼성증권 제[2321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br>(고위험,원금비보장형)  |  |  |  |  |
|   |                | EUROSTOXX50, NKY225, S&P500  |  |  |  |  |
|   |                | 5,000,000,000 원  |  |  |  |  |
| 1증권당  | 액면가액           | 10,000 원   |  |  |  |  |
| 1증권당  | 발행가액           | 10,000 원   |  |  |  |  |
| 발항  | l 수량           | 500,000 증권   |  |  |  |  |
| 최소청   | 형약금액           | 최소 100만원 부터 1만원 단위   |  |  |  |  |
|   | 청약시작일          | [2019년 11월 29일]  |  |  |  |  |
| 청약기간  | <b>70.7</b> 70 | [2019년 12월 05일]<br>(단, 청약종료일 당일은 13시까지 청약접수)   |  |  |  |  |
|   | 청약종료일          |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br>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숙려기간: [2019년 12월 03일]부터 [2019년 12월 05일]까지                          |  |  |  |  |
|   | 01 01          |  |  |  |  |  |
| 납 입 일<br>배정 및 환불일<br>발 행 일<br>예 탁 기 관<br>증권의 상장여부<br>자동조기상환조건 |                | [2019년 12월 05일]<br>[2019년 12월 05일]   |  |  |  |  |
|   |                | [2019년 12월 06일]  |  |  |  |  |
|   |                | 한국예탁결제원  |  |  |  |  |
|   |                | 비상장  |  |  |  |  |
|   |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br>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자동조기상   | 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  |
| 만 기   | 일 (예정)         | [2022년 12월 05일]  |  |  |  |  |
| 만기평기  | l일 (예정)        | [2022년 12월 05일]  |  |  |  |  |
| 만기상환금액 지급일(예<br>정)<br>만기시 결제방법<br>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 [2022년 12월 08일]  |  |  |  |  |
|   |                | 현금결제   |  |  |  |  |
|   |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br>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br>자들의 해당 청약계좌 또는 투자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반환됩<br>니다. |  |  |  |  |
|   |                | 본 증권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br>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  |  |  |  |

| 항 목     | 내 용   |  |  |  |  |  |
|---------|---|--|--|--|--|--|
| 기타 유의사항 |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br>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br>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br>본 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  |  |  |  |
| 헤지운용사   | 해당사항없음  |  |  |  |  |  |

\* 헤지운용사란, 본 증권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발행회사가 위험회피거래를 하는 경우의 거래상대방을 말하며 해당 거래상대방은 본 증권 발행조건에 명시된 만기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2017년 04월부터 시행되는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따라 동 파생결합 증권에 직접 또는 신탁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법인 제외) 중 투자성향 부적합투자자 및 70세 이상 투자자는 청약기간(신탁 계약의 경우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3 영업일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3 영업일)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에 따라 상이한 청약일(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니 청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모집 예정이며 발행 증권의 총수는 청약 종료일에 확정됩니다.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1) 본 증권의 발행가액은 1증권당 10,000 원입니다.

- (2) 본 증권의 공모가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9,802.39 원]으로 추산됩니다.
- \* 이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시장변수를 근거로 하여 발행회사가 내부적으로 산정한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합니다.
- \* 본 증권의 이론가격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과거 데이터 및 시장변수를 근거로 하여 발행회사가 내부적으로 산정한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하며,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항 목         | 내 용   |
|-------------|---|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 [EUROSTOXX50]: 13.83%<br>[NKY225]: 16.00%<br>[S&P500]: 14.98%                                       |
| 기초자산간의 상관계수 | [EUROSTOXX50], [NKY225]: 0.46900<br>[EUROSTOXX50], [S&P500]: 0.63725<br>[NKY225], [S&P500]: 0.52195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산출기준

[EUROSTOXX50]: 6개월 변동성과 3년 변동성의 평균

[NKY225]: 6개월 변동성과 3년 변동성의 평균 [S&P500]: 6개월 변동성과 3년 변동성의 평균

#### 상관계수 산출기준

[EUROSTOXX50], [NKY225]: 6개월 상관계수와 3년 상관계수의 평균 [EUROSTOXX50], [S&P500]: 6개월 상관계수와 3년 상관계수의 평균

[NKY225], [S&P500]: 6개월 상관계수와 3년 상관계수의 평균

발행 이후 발행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고추 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가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 모집 및 매출관련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 항 목                  | 내 용  |
|----------------------|--|
| 증권의 발행 공고            | 청약 종료일 이후에 삼성증권 홈페이지( http://www.samsungp<br>op.com)에 게재합니다. |
| 모집 또는 매출가액<br>확정의 공고 | 청약 종료일 이후에 삼성증권 홈페이지( http://www.samsungp<br>op.com)에 게재합니다. |
| 청약안내의 공고             | 청약 시작일에 삼성증권 홈페이지( http://www.samsungpop.com)에 게재합니다.        |
| 청약결과 배정공고            | 청약 종료일 이후에 삼성증권 홈페이지( http://www.samsungp<br>op.com)에 게재합니다. |

## (2) 청약의 방법

| 항 목       | 내 용  |
|-----------|--|
| 청약방식 및 절차 | - 일반청약이며 소정의 청약서, 위험고지서 등에 필요한 사항을<br>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b>청약취급</b><br>장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하거나, 삼성증권 HTS(Home Tr<br>ading System) 및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 상에<br>서 온라인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온라인청<br>약이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사전에 당사<br>지점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청약서에는 발행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리인이 본인 및 대리인을 표시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
|           | - 개인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 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부터 16시 30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합니다(단, 청약종료일 당일은 13시까지 청약접수). 단, 온라인청약의 경우 접수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사전에 당사 지점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자격      | 당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고객으로서 내·외국인/거주<br>·비거주의 제한이 없습니다. (미개설고객인 경우 계좌개설 후<br>청약가능)   |
| 청약일(기간)   | [[2019년 11월 29일] 부터 [2019년 12월 05일] 까지]  |

| 항 목 내 용  |  |  |  |  |  |
|----------|--|--|--|--|--|
|          | (단, 청약종료일 당일은 13시까지 청약접수)  |  |  |  |  |
|          |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br>아래 '청약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숙려기간: [2019년 12월 03일]부터 [2019년 12월 05일]까지  |  |  |  |  |
| 청약취급처    | 삼성증권의 본,지점   |  |  |  |  |
| 청약단위     | 1만원  |  |  |  |  |
| 최소 청약금액  | 최소 100만원 부터 1만원 단위   |  |  |  |  |
| 청약한도     | 없음   |  |  |  |  |
| 청약증거금    | - 청약시 청약금액의 100%를 청약증거금으로 징구합니다.<br>단,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증권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br>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br>- 초과청약금은 납입일에 해당 청약계좌 또는 투자자가 지정한<br>환불계좌로 반환됩니다.  |  |  |  |  |
| 청약시 유의사항 | 1) 현금청약, 대체청약, 자금과 대체청약 가능합니다. 2) 청약취소는 청약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취소시 청약 자예수금에서 인출하여 해당 계좌에 정상잔고로 입금처리 됩니다. 3) 주가연계증권 발행을 위한 신규청약만 허용되며, 발행 이후 운용기간 중 추가청약은허용되지 않습니다. 4) 청약기간 중 동일인이 동일계좌로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청약을 취소 후 재청약 하셔야 합니다. 5) 청약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청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한 청약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6) 발행한도는 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능금액을 말하며 [발행가액 x 발행수량]입니다 7) 청약금액은 [발행가액 x 청약수량]입니다. 8)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2017년 04월부터 시행되는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따라 동 파생결합증권에 직접 또는 신탁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법인 제외) 중 투자성향 부적합투자자 및 70세 이상 투자자는 청약기간(신탁 계약의 경우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3 영업일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3 영업일)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투자자에 따라 상이한 청약일(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니 청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3) 청약결과 배정방법

-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해당 청약 금액만을 발행하기로 합니다.
- 총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합니다(1증권 미만 절사). 단, 위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당 청약자에게 각 1증권씩 배정하되, 청약금액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좌 개설일이 앞서는 순서, 위탁계좌 개설일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좌번호가 앞서는 순서대로 잔여수량을 1증권씩 배정합니다. 그러한 배정에 따른 후에도 남게되는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미발행으로 처리합니다.

#### (4)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반환

-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 증권의 납입금으로 자동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발행이 취소되거나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됨에 의하여 청약증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해당 청약계좌 또는 투자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합니다. 단, 그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증권의 발행 및 교부등에 관한 사항

- 본 증권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 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본 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1) 기타 발행과 관련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 본 증권의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은 발행회사인 삼성증권이 계산대리인(Calculatio n Agent)으로서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발표하는 기초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본 증권의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의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지급대행기관: (주)우리은행 삼성타운금융센터

(지급대행기관은 발행회사의 지시에 따라 상환금액의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상환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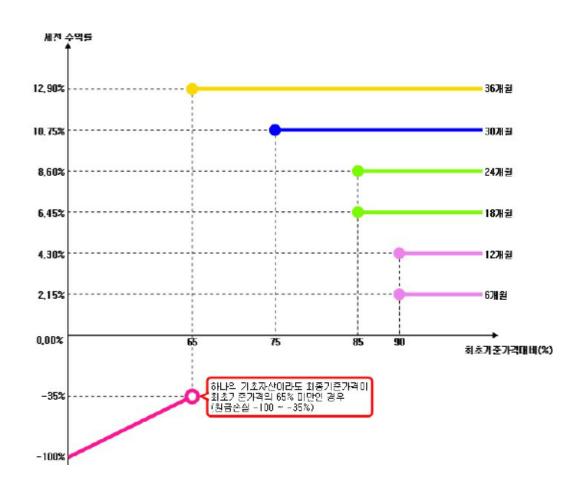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1. 예상손익구조
- (1) 상황별 손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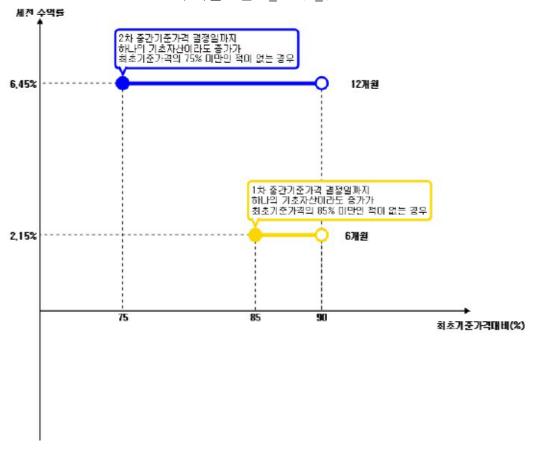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세전)  |
|-----------------|--|------------|
|                 | ①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br>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경우  | 연 4.30%    |
|                 | ② 위 ①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이후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포함) 이전에 하나의 기초<br>자산이라도 종가에 최초기준가격의 85%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는 경우 | 2.15%      |
|                 | ③ 위 ②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경우                            | 연 4.30%    |
| 자동<br>조기/<br>만기 | ④ 위 ③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이후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포함) 이전에 하나의 기초<br>자산이라도 종가에 최초기준가격의 75%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는 경우 | 6.45%      |
| 상환              | ⑤ 위 ④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경우                            |            |
|                 | ⑥ 위 ⑤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경우                            | 연 4.30%    |
|                 | 7 위 ⑥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경우                            | 2 4.30%    |
|                 | ⑧ 위 ⑦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최종기준가격 결정일에 각<br>기초자산의 해당 최종기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br>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경우                        |            |
| 만기<br>상환        | <ul><li>⑨ 위 ⑧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최</li><li>종기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5% 보다 작게 되는 경우</li></ul>                     | -100%~-35% |

- (2) 투자손익 사례: 1억원을 투자한 경우
- 자동조기상환 : 1차 중간기준가격결정일(2020.06.05)에 EUROSTOXX50지수, NKY225 지수, S&P500지수가 각각 최초기준가격x90%인 경우 ⇒ 1억 215만원(= 1억원 + 6개월간 수익 215만원)을 상환 받음
- 만기상환: EUROSTOXX50지수의 최종기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55%, NKY225지수의 최종기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55%, S&P500지수의 최종기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55%인 경우
- ⇒ 5,500만원(=1억원 x 55%)을 상환 받으므로 원금손실 4,500만원 발생
- 최대손실가능금액: 1억원 투자시 투자원금 전체

#### (3)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 수익률조견표\_23212\_1



수익률조견표 23212 2

#### 가. (가정) 1억원 투자

○ 기초자산 [EUROSTOXX50], [NKY225], [S&P500]의 최초기준가격이 각각 10 ,000, 10,000, 10,000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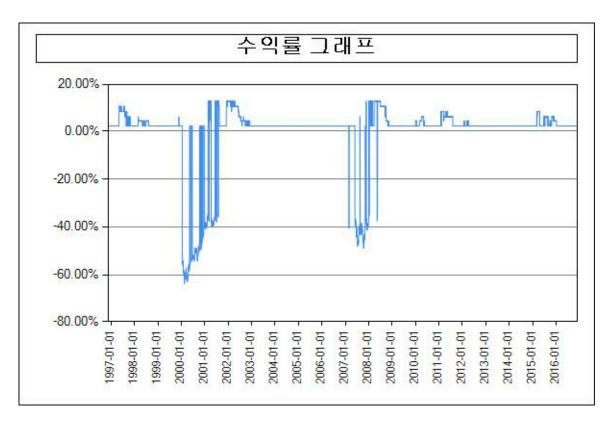
## 나. 손실 사례

○ 만기일까지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상환조건이 충족된 적이 없고 하나의 기초자산 이라도 최종기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65%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이 손실 실현

| 구분  | 내 용   | 손실률         |
|-----|---|-------------|
| 사례1 | 만기일에 [EUROSTOXX50], [NKY225], [S&P500]의 최종기준가<br>격이 각각 10,000, 10,000, 5,500일 때(더 많이 하락한 [S&P500]<br>가격 기준)<br>-> 1억원 + [1억원 X (-45%]] = 5,500만원 상환 | <b>-45%</b> |

| 사례2 | 나례2 만기일에 [EUROSTOXX50], [NKY225], [S&P500]의 최종기준가<br>격이 각각 10,000, 10,000, 4,500일 때(더 많이 하락한 [S&P500]<br>가격 기준)<br>→> 1억원 + [1억원 X (-55%)] = 4,500만원 상환 |       |  |  |  |  |
|-----|---|-------|--|--|--|--|
| 사례3 | 만기일에 [EUROSTOXX50], [NKY225], [S&P500]의 최종기준가<br>격이 각각 10,000, 10,000, 3,500일 때(더 많이 하락한 [S&P500]<br>가격 기준)<br>-> 1억원 + [1억원 X (-65%)] = 3,500만원 상환     | -65%  |  |  |  |  |
| 사례4 | 만기일에 [EUROSTOXX50], [NKY225], [S&P500]의 최종기준가<br>격이 각각 10,000, 10,000, 0일 때(더 많이 하락한 [S&P500]가격<br>기준)<br>-> 1억원 + [1억원 X (-100%]] = 0원 상환 (전액 손실)      | -100% |  |  |  |  |

## (4)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과거 수익률 분포



수익률그래프\_23212

|     | -100% | -80% | -60% | -40% | -20% |        |         |        |        |        |         |    |
|-----|-------|------|------|------|------|--------|---------|--------|--------|--------|---------|----|
| 투자  | 이상~   |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 2.15%  | 4.30%   | 6.45%  | 8.60%  | 10.75% | 12.90%  | 합계 |
| 수익률 | -80%  | -60% | -40% | -20% | 0%   | 2.13/6 | 4.50 /6 | 0.45/6 | 0.0076 | 10.75% | 12.9076 | 다게 |
|     |       |      |      |      |      |        |         |        |        |        |         |    |

|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       |       |       |       |       |      |
|----|-------|-------|-------|-------|-------|--------|-------|-------|-------|-------|-------|------|
| 빈도 | 0.00% | 0.59% | 5.48% | 2.72% | 0.00% | 71.89% | 5.34% | 4.56% | 2.54% | 2.86% | 4.03% | 100% |

주1) 위 표와 그래프는 1996년 11월 26일부터 2019년 11월 25일 까지의 기초자산의 종가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주2) 분석시작일 1996년 11월 26일부터 2016년 11월 25일까지 20년간 매 거래소 영업일에 동일한 상품이 신규 발행되어 투자가가 이를 반복해서 매입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 각각 만기수익률(절대수익률 기준)을 표본으로 추출하였습니다.(총 4,891회)

주3) 위 표는 과거 기초자산의 종가를 이용하여 손익구조 예시에 불과하며, 본증권의 투자에 따른 미래의 만기 상환수익률 예측치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5) 최대손실액 및 최대이익액

| 구 분   | 내 용                                  | 투자수익률  |
|-------|--------------------------------------|--------|
|       |                                      |        |
| 최대손실액 | EUROSTOXX50의 최종기준가격이 영(0)이거나, NKY225 | -100%  |
|       | 의 최종기준가격이 영(0)이거나, S&P500의 최종기준가     |        |
|       | 격이 영(0)인 경우 최대손실이 가능함.               |        |
| 최대이익액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고, 각 기초자산의 최종기준        | 12.90% |
|       | 가격이 모두 각각의 만기행사가격(=최초기준가격 X 65%      |        |
|       |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최대이익이 가능함.             |        |

## 2. 권리의 내용

#### (1)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정하여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환금액을 해당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최초기준가격 및 자동조기상환내역

| 항 목       | 내 용                                  |
|-----------|--------------------------------------|
| 1) 최초기준가격 | [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거래소 종가 |

| 항 목                    | 내 용   |
|------------------------|---|
|                        | 또는 산출된 종가] [NKY225]: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S&P500]: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거래소 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  |
| 2) 최초기준가격 결정<br>일 (예정) | [2019년 12월 05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에 어떠한 기초자산가격이 발표되지 않는 경우 계산대리인은 기준가격 결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초자산 전부에 대한 기준가격 결정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 3) 중간기준가격              | 각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각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br>가 또는 산출된 종가(총 [5]회)  |
| 4) 중간기준가격 결정<br>일(예정)  | 1차: 2020년 06월 05일 2차: 2020년 12월 04일 3차: 2021년 06월 04일 4차: 2021년 12월 03일 5차: 2022년 06월 03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에 어떠한 기초자산가격이 발표되지않는 경우 계산대리인은 기준가격 결정일을 변경할 수있으며 이 경우 기초자산 전부에 대한 기준가격 결정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 5)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br>[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x 90%]<br>[NKY225]: [최초기준가격 x 90%]<br>[S&P500]: [최초기준가격 x 90%]  |

| 항 목                       | 내 용  |
|---------------------------|--|
|                           |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x 90%] [NKY225]: [최초기준가격 x 90%] [S&P500]: [최초기준가격 x 90%]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x 85%] [NKY225]: [최초기준가격 x 85%] [S&P500]: [최초기준가격 x 85%]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 [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x 85%] [NKY225]: [최초기준가격 x 85%] [NKY225]: [최초기준가격 x 85%] [S&P500]: [최초기준가격 x 85%] [S&P500]: [최초기준가격 x 85%] [S&P500]: [최초기준가격 x 75%] [NKY225]: [최초기준가격 x 75%] [NKY225]: [최초기준가격 x 75%] |
| 6) 1차 리자드 행사가격            | [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x 85%]<br>[NKY225]: [최초기준가격 x 85%]<br>[S&P500]: [최초기준가격 x 85%]  |
| 7) 2차 리자드 행사가격            | [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x 75%]<br>[NKY225]: [최초기준가격 x 75%]<br>[S&P500]: [최초기준가격 x 75%]  |
| 8) 자동조기상환조건 및<br>자동조기상환금액 | <1> 아래 가. 또는 나.의 경우가 하나라도 발생하면, 1차 중<br>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br>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br>가.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br>준가격이 모두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br>나 같게 되는 경우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2.15%)]<br>로 합니다.<br>나. 위 가.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 결정일(불<br>포함) 이후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포함) 이전까지 하나의<br>기초자산이라도 종가에 각각의 1차 리자드 행사가격보다 작<br>게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br>% + 2.15%)]로 합니다.                                       |

| 항 목 | 내 용  |
|-----|--|
| 항 목 | <ul> <li>나 용</li> <li>&lt;2&gt; 위 &lt;1&gt;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아래 가. 또는 나.의 경우가 하나라도 발생하면,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가.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경우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4.30%)]로 합니다. 나. 위 가.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이후 2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포함) 이전까지 하나의기초자산이라도 종가에 각각의 2차 리자드 행사가격보다 작게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6.45%)]로 합니다. &lt;3&gt;위 &lt;2&gt;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가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3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6.45%)]로 합니다. &lt;4&gt;위 &lt;3&gt;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 (100% + 6.45%)]로 합니다. &lt;4&gt;위 &lt;3&gt;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4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8.60%)]로 합니다. &lt;5&gt;위 &lt;4&gt;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해당 중간기준가격이 모두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으면,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8.60%)]로 합니다. &lt;5&gt;위 &lt;4&gt;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8.60%)]로 합니다. &lt;5&gt;위 &lt;4&gt;에 의한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10.75%)]로 합니다. 이 기준가격이 모두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10.75%)]로 합니다. 이 기준가격이 모두 5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본 증권에 대한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x (100% + 10.75%)]로 합니다. 이 기준가 되었다면 보안하는 및 생각하는 및 생</li></ul> |
|     | 위의 각 경우가 모두 발생하지 않으면 발행회사의 자동조기<br>상환 이행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일단 자동조기상환 이행<br>의무가 발생하면, 발행회사는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의무 외<br>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항 목         | 내 용                         |
|-------------|-----------------------------|
| 9) 자동조기상환금액 | 해당 중간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지급일         |                             |

## - 만기상환내역

| 항 목                   | 내 용   |
|-----------------------|---|
| 1) 최종기준가격             | [EUROSTOXX50]: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거래소<br>종가 또는 산출된 종가]<br>[NKY225]: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거래소 종가 또<br>는 산출된 종가]<br>[S&P500]: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거래소 종가 또<br>는 산출된 종가]  |
| 2) 최종기준가격 결정일<br>(예정) | 만기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에 어떠한 기초자산가격이 발표되지 않는 경우 계산대리인은 기준가격 결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경우 기초자산 전부에 대한 기준가격 결정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 3) 만기행사가격             | [EUROSTOXX50]: [최초기준가격 x 65%]<br>[NKY225]: [최초기준가격 x 65%]<br>[S&P500]: [최초기준가격 x 65%]   |
| 4) Worst 가격변동률        | 각 기초자산에 대하여<br>[(최종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을 계산하<br>여 얻은 값들 중 최소의 값  |
| 5) 만기상환금액             | <1> 상기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각기초자산의 최종기준가격이 모두 각각의 만기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100% + [12.90%])]를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2>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최종기준가격이 해당 만기행사가격보다 작게 되면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Worst 가격변동률 + 1)]을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 |

| 항 목           | 내 용                      |
|---------------|--------------------------|
|               | 금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
| 6)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 최종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기타사항

납입일로부터 투자자의 본 주가연계증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납입일로부터 본 증권의 발행일까지의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기 지정된 기준가격 결정일 및 만기일은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각각 결정됩니다. 만일 해당 일자에 하나의 거래소라도 개장하지 않게 되는 경우 계산대리인은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 및 만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 지정된 납입일, 지급일 등 금원의 지급이 필요한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을 해당 납입일. 지급일 등으로 합니다.

만기상환금액 지급일(예정)은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발행회사가 예측하여 예상되는 일자를 기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영업일 여부가 발행회사의 예측과 달라지는 경 우 만기상환금액 지급일(예정)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상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결정 방 식 또는 그러한 결정방식이 없는 경우 영업일 결정 방식에 따라 조정 및 결정됩니다.

예정된 기준가격 결정일 중 어떤 기준가격 결정일의 각 일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산대리인은 변경된 기준가격 결정일의 가격을 근거로 기준가격을 산정합니다(그러한 변경여부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기준가격 결정일을 "확정 기준가격 결정일"이라고 함). 이러한 경우 아래 각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 하나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결정일이 둘 이상인 경우 기준가격 결정일 중 하나의 변경에 의해 다른 기준가격 결정일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 니다. 기준가격 결정일 변경에 따라 지급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 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 기초자산 중 일부에 대한 기준가격 결정일 변경사유는 나머지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자동조기상환조건 또는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

#### - 기타사항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상 예정된 기준가격 결정일 이후 확정 기준가격 결정일자(포함)까지의 기간동안 자동조기상환조건 또는 지급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 또는 지급 이행의무는 확정 기준가격 결정일자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조기상환금액 또는 지급금액 또한 확정 기준가격 결정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예정된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이 2010년 10월 20일이었으나 확정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자는 2010년 10월 24일로 달라지게 되고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2010년 10월 24일에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2010년 10월 24일에 발생하게 되며, 자동조기상환금액은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3> 지급일 결정을 위한 기준가격 결정일(기준가격 결정일이 둘 이상인 경우, 마지막 기준가격 결정일을 의미함)은 원래 예정되어 있던 기준가격 결정일이 아닌 확정 기준 가격 결정일이 됩니다. 이 경우 지급일은 상기 기재된 예정일자보다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0월 20일로 원래 예정되어 있던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신고서에 의해 확정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자가 2010년 10월 24일로 변경되면,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은 2010년 10월 20일 이후 [2]영업일이 아니라 2010년 10월 24일 이후 [2]영업일이 됩니다.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기재된 산식에 따라 계산된 결과는 소수점 조정 없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1증권 당 상환 또는 지급금액은 1원 미만 절사합니다.

발행회사는 본 신고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거나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

#### (2) 결제방법 및 절차

본 증권은 현금결제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본 증권의 내용에 따른 상환 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나 권리행사 없이 자동으로 본 신고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지급일 당일 현금 으로 지급되면서 상환이 완료됩니다.

#### (3) 통지방법 및 절차

<1> 발행회사는 상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없이 상환금액을 산정하여 발행회사의 본.지점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만기 상환 전 본 증권의 평가금액(기준가)은 발행회사 홈페이지에 매일 게시할 예정입니다

<3> 본 증권의 평가금액(기준가)은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율,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을 주요 가격결정 요인으로 하는 당사의 평가모델에 의하여 산출됩니다. 평가가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므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일종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여 증권을 중도상환 하도록 하며,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발행회사는 주식시장 붕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청산할 수 없는 경우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요청에 응하더라도 상환금액이 아래 표와 달리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가연계증권 발행회사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의 요청

본 증권은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자동조기상 환이 원칙이나 투자자는 중도상환 요청가능일에 본 증권의 중도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본 증권의 계산대리인이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의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 (4) 투자자의 요청에   | 의한 중도상환   |
|----------------|---|
| 중도상환 요청가능일     | 투자자는 발행회사가 사전 고지한 바에 따라 중도상환을 중도상 환 요청가능일 오후 4:00 이전에 유선으로 요청하거나 또는 발행회사의 신청 양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유선요청 시에는 투자자의 중도상환 요청 내역이 발행회사에 의해 녹취됩니다. 단, 본 신고서에 의하여 중도상환 요청가능일이 조정될수 있으므로 예정된 중도상환 요청가능일 이전에 이를 발행회사에 확인하여 중도상환을 통한 투자자의 유동성 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중도상환요청<br>최소금액 | 최소 100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만일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의 금액이 최소청약금액보다 작으면 소유금액을 중도상환요청 최소금액으로 합니다.   |
| 기준시각           | 오전 11시 (서울 시간 기준)   |
| 중도상환금액 결정<br>일 | <1> 중도상환 요청일 기준시각 이전 중도상환 요청한 경우:<br>중도상환 요청 당일. 단,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br>중도상환 요청일 (불포함) 후 [1]거래소영업일<br><2> 중도상환 요청일 기준시각 경과 후 중도상환 요청한 경우:<br>중도상환 요청일 (불포함) 후 [1]거래소영업일  |
| 중도상환금액 지급<br>일 | 중도상환금액 결정일(불포함) 후 [2]영업일. 단, 중도상환금액 결<br>정일에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의무 또는 만기상환의무가 발생<br>하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지급일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중도상환 요청의<br>철회 | 불가  |
| 중도상환금액의 수<br>준 |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기준으로 본 증권의 청산가치를 발행회사가<br>산출한 금액이며 중도상환가격 산정시 발행회사가 해당 증권의<br>청산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                | 중도상환요청일에 따른 중도상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br><1> [발행일](불포함) 이후 [2020년 06월 05일 (6개월)](포함)<br>이전까지의 중도상환 요청가능일에 요청한 중도상환 건의 경우,<br>중도상환금액 결정일 후 [1]영업일에 공시되는 평가금액의 9<br>6% 이상의 가격으로 중도상환금액이 결정됩니다.<br><2> [2020년 06월 05일 (6개월)](불포함) 이후 만기일(불포함)<br>이전까지의 중도상환 요청가능일에 요청한 중도상환 건의 경우, |

####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후 [1]영업일에 공시되는 평가금액의 9 8% 이상의 가격으로 중도상환금액이 결정됩니다.

- 단,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 내역(공정가액(기준가), 실제 중도상환가격, 공정가액(기준가) 대 비 실제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교부해 드립니다.

중도상환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유의할 사 항 중도상환금액은 중도상환 관련 비용(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 환을 요청함에 따라 발행회사에 지급할 비용으로서 발행회사가 본 거래의 헷지 등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초자산, 관련 선물/ 옵션, 외화, 채권 및 이자율 스왑 등의 매수/매도 포지션을 청산할 때 발생하는 매수/매도 호가 차이로 인한 비용 등을 포함함), 중 도상환금액 결정일의 기초자산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 도상환요청일,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된 평가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중도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회사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달리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 산대리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5) 증권의 발행 취소 및 환불

<1> 본 증권의 발행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매매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경우 발행 취소 사실을 발행일에 '삼성증권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에 게재합니다. 또 가까운 영업점이나 삼성증권 고객지원센터(02-2020-8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 증권의 상장 및 매매

<1>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 본 증권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 <2>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금리수준, 기초자산의 가격수준,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기초자산의 변동성,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이 있습니다. 본 증권의 발행시 발행회사가 산정한 본 증권의 공정가액에 대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액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공정가액 외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 기타 가격결정요인들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투자위험요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III. 투자위험요소'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본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입니다. 따라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증권의 보유자는 매매를 통하여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현금화할 수 있으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장내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며 일반적인 장외에서의 거래는 매우 제한적일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 만기이전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절차는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 사유 및 조기상환 방법

#### 1)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2>에 따라 지체없이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사실, 조기상환기준일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나. 발행회사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 다.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 라. 발행회사가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 관으로 지정된 경우
- 마. 발행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더 이상 본 증권상의 의무를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2>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만기일 이전에라도 본 증권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사실, 조기상환기준일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단,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 나. 거래소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거래소가 상당기간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기초자산 산출기관에서 기초자산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는 경우
- 라.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거래소가 기초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장폐지를 공시하는 경우
- 마.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기초자산의 성격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증권의 내용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기초자산 발행회사에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바. 본 증권의 발행 이후 법령의 제정·개정,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행하는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 사. 본 증권의 발행 이후 법령의 제정·개정,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행하는 거래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 경우(세금 납부비용의 증가, 면세와 같은 세금혜택의 축소 등 세금과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3> "조기상환기준일"은 위 <1>의 경우 각호의 사유 발생일 (다만, 사유 발생일이 거래 소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거래소영업일)을 의미하며, 위 <2>의 경우에는 발행회사

#### 1)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

가 통지 당시 조기상환기준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 2) 조기 상환 방법

위 1)에서 정한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기준일(불포함)로부터 [12]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발행회사는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기상환금액을 결정합니다. 이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의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일단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기상환기준일이 지정되면, 발행회사는 본항에 따른 조기상환금액 지급 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둘 이상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순서에 관계 없 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금액 지급 예정일에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며, 발행회사는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본 증권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기초자산가격이 영(0)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상환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상환금액 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초자산 거래정지 등의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상환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상당히 연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권리내용의 변경

본 증권은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본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회사는 지체없이 발행회사의 홈페이지(www.samsungpop.com)에 그 내용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 1) 권리내용의 변경

<1> 기준가격 결정일 등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날에 어떤 기초자산과 관련하여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산대리인은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기준가격 결정일(만기일 등), 기초자산가격, 기초자산가격 결정시점, 기타 지급일 등 본 증권의조건을 변경 및 결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상환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가.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본 증권의 상환금액 지급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발행회사가 행하는 기초 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 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제3자(비거주 자를 포함)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위험회피(Hedge)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소· 청산소 또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이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외환시장을 포 함한 금융시장의 중대한 장애(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 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회사가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기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로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 피한 것으로 계산대리인이 판단하는 경우

단,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지급금액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고 추후 정정발표등으로 계산대리인(Calculation Agent)인 삼성증권이 정확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삼성증권은 투자자에게 이와 같이 확인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급금액과 기 산정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인 당사는 위 차액에 대한 정산의무 이외에는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본 신고서상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만일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증권을 상장하게 되는 경우 권리의 변경에 대하여 본 증권이 상장된 해당 거래소의 조치는 본 일괄신고추 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거래소, 관련 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본 증권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헤지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부도발생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 우 등)에는 기초자산 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투자원금 전체의 손 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1) 권리내용의 변경

<2> 본 증권의 조건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계산대리인(Calculation Agent)인 삼성증권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삼성증권은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 항에 따른 본 증권의 조기상환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3.에 의한 본 증권 조건의 변경 및 결정 내용에 따라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할 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조기상환사유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순서에 관계 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금액 지급 예정일에 해당 조기상환사유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며, 발행회사는 그 이 후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본 증권의 보유자는 당사에게 해의(본 증권의 보유자를 해할 의사)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발행회사가 행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 2)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의 계산 발표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기초자산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기초자산의 계산 및 발표의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산 산출기관에 따릅니다.

<2>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지수를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지수를 중요하게 변경한 경우(구성주식, 자본전입 기타 다른 사소한 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 계산대리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발행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하거나 변경 전 마지막으로 유효하게 사용한 지수 계산 공식 또는 방법에 따라 상관례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상환 또는 지급금액 산정방법 및 지급일 등의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기초자산의 산출 폐지이전에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마지막으로 유효하게 사용한 공식 및 방법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기초자산 산출기관 이외의 제3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한 경우 발행회사는 승계기관의 산출방식 등을 고려하여 해당 승계기관이 발표하는 새로운 기초자산으로 본 증권의 기초자산을 대체하거나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3)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이 상장폐지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예정되어 당해 증권을 더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은 3.(1)에 따라 산출된 조기상환금액을 본 증권 보유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증자 및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산대리인은 Corporate Action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초자산, 기초자산의 계약주식수, 기준가격, 행사가격 등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관련 기준가격 결정일, 지급일 등 본 증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나. 증자 등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준가격 산출가격은 아래 각항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각항에 따라 산출된 조정 후 기준가격은 원미만 절사이며, "증자전 주식수"는 "신주배정 기준일 전전일 주식수"를 의미하고, "권리부종가"는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의 전일종가"를 의미합니다

| 변경사유                                | 조정후 기준가격   |
|-------------------------------------|--|
| 유상증자<br>(구주주에게 청약권리가<br>배정된 경우에 한함) | 조정 전 기준가격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 1주<br>당 발행가액 / 권리부종가)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br>수) |
|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 조정전 기준가격/(1+증자전 주식 1주당 신배정 주식수)  |
| 무상감자, 액면분할 및 병합                     | 조정전 기준가격에 해당 비율을 감안하여 계산대리인이<br>조정한 가격   |
| 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br>이전)              | 계산대리인이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br>거래소의 변경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br>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조정한 가격 |

#### 3)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Stock Option행사 |
|-------------------------------------|
| 등(구주주에게 신주의 발행과 관련된 권리가 배정되지 않      |
| 는 경우)으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기준가격을 조정     |
| 하지 아니함                              |
|                                     |

<3> 발행회사 임의의 기준가격 조정

다음의 경우 발행회사가 선의로 판단하여 별도의 조정방법을 정하여 기준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신배정주식수"가 주주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행되는 경우
- ② 유상증자 등의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격이 기초자산의 유통가격대비 할인하여 발행되지 않아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청약의 실익이 없는 경우
- ③ 배정되는 신주가 기초자산과는 다른 권리관계를 가지는 경우 (보통주에 대한 우선주 증자 등)
- ④ 기타 기초자산의 변동사유와 관련되어 구주주에게 부여된 권리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 ⑤ 기초자산에 대한 복수의 변동사유가 동일한 일자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일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각 사유가 발생한 일자 사이에 정규시장에서의 경쟁 매매에 의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포함)
- ⑥ 기타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 아닌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해 당국가의 법규 또는 상관습에 따라 발행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으 로 판단한 결과 조정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

<4> 거래소의 기초자산가격의 산출 또는 발표를 다른 기관이 승계하는 경우

- ① 다른 기관이 발표한 기초자산가격이 종전 거래소가 산출 또는 발표한 기초자산 가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계산대리인이 판단하는 경우 새로 발표된 기초자산가격을 사용합니다.
- ② 만일 계산대리인이 이러한 기초자산가격 산출 또는 발표 기관의 조정에 따라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증권의 발행조건

#### 3)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및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3)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합니다.
-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대한 결정을 한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발행회사의 홈페이지 (www.samsungpop.com) 또는 영업점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보유자에의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4) 발행회사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발행회사가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상사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러한 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발행회사가 관련법령에 의거 파산절차, 회생 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채권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 있는 경우 본 증권보유자의 권리구제는 관련법령 등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단, 영업일 조정, 공휴일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인하여 지급일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준거법과 재판관할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본 증권에 관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 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등 본 증권에 관한 서류의 기재내용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 내용을 확정하되, 그러한 기재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령, 상관례를 적용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확정합니다.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 등 일체의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받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투자에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가격변동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기초자산의<br>가격변동에<br>연동한<br>수익구조에<br>의한 위험 | -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그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상품입니다만, 상품의 수익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조기상환의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되어있는 파생상품적 성격을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상환 이전에 기초자산이 존재하지 않게되거나, 기초자산의 성격이 중대하게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 당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는 경우,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가 곤란해 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발행조건에 명시된 상환 또는 지급금액을 산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산대리인인 발행회사는 금액 산정방식과 지급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조정의 결과에 의해 투자원금 전체의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이러한 조정이 |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나 조기상환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br>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본 증권의 권리내용의 조정이나 조기상환 등에<br>대한 설명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br>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
| -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른 위험: 기초자산가격이 하락할수록 평가가격<br>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액(기준가) 하락속도 증가 위험:<br>조기상환/만기상환조건에 가까울수록 기초자산의 변화에 따른 공정가<br>액(기준가)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공정가액(기준가)의 상승 또는 하락<br>의 정도가 가장 높고,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에서 멀어질수록 공<br>정가액(기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의 정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
|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br>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평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 잔존만기에 따른 위험:<br>잔존만기가 짧아질수록 평가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 이자율수준에 따른 위험:<br>이자율이 상승할수록 평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 (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기초자산간 상관계수에 따른 위험:<br>기초자산간 상관계수가 하락할수록 평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br>니다.  |
| - 배당에 따른 위험:<br>배당 추정치가 상승할수록 평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 발행회사는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br>자산 또는 기초자산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br>,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br>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br>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br>다. |
|   |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발행회사의<br>정상적인<br>영업활동이<br>미치는 영향 | 또한 발행회사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br>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
| 평가손실위험                           | - 본 증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은 만기 이전에 중도상<br>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유기간 동<br>안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2. 발행회사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 - 본 증권의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회사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회사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 발행회사의 재<br>무, 손익상황과 | - 발행회사인 삼성증권의 파산, 지급불능, 지불유예 등 삼성증권의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을<br>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br>-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증권으로서 본 증권으로  |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관련한 위험 | 인한 발행회사의 채무는 발행회사의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순위를 가지므로 발행회사인 삼성증권의 재무/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회사가 재무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었습니다.  - 발행회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회사가 2019년 11월 14일자로 제출한 분기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 |
|        | 다.   |
| 결제지연위험 | 발행회사가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상법제54조에 따른 법정상사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단, 본 신고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3. 중도상환 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조기상환 위험                  | - 본 증권의 권리내용조정 사유에 해당하여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br>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br>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br>은 증권의 조기상환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br>있습니다.   |
| 중도상환청구권<br>행사가 제한될<br>위험 | -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br>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br>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시 이러한 점을<br>감안하시기 바랍니다.<br>- 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br>하에 만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br>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각 사유<br>에 따른 만기 전 상환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만기 전<br>상환이 제한되는 제반 상황 및 만기 전 상환에 따른 상환금액 결정구조<br>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 - 투자자 요청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시점에서의   |
| 중도상환시   | 평가가격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및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  |
| 원금손실 위험 | 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중도상환금액  | -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계산대리  |
| 산정 관련   | 인으로서 중도상환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해상충리스크가    |
| 이해상충 위험 | 발생할 수 있으나, 발행회사는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 |
| (계산대리인이 |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   |
| 발행회사인 경 | 하겠습니다.                                 |
| 우)      |  |

# 4. 기타 투자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 -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본질가치가 변동되는 파생상품적<br>성격을 포함한 증권으로서, 원금 손실이 초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br>식 또는 채권 등과는 달리 복잡한 손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br>본 증권은 주식 또는 채권 등의 증권과는 달리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목<br>적보다는 발행회사가 투자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br>으로 설계됨으로써 본 증권 취득에 따른 권리의 내용이 다른 증권에 비<br>하여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         |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br>리내용 및 제반 위험요인 등에 대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내용(<br>특히 본 항에 기재된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최<br>종적인 투자결정을 하여야만 하며, 이를 소홀히 한 채 투자가 행하여질<br>경우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투자결과가 발생하는 투자위험이 따<br>를 수 있습니다.   |
| 일반적인 위험 |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투자위험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상세하게<br>설명을 하였습니다만, 발행회사가 현재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중요<br>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br>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br>요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투자위험에 관한<br>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br>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률상 또는 세법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T &            | 등 세부적인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측면의 투자 위험을<br>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투자자 자신의<br>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                |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br>부담하지 아니하며, 본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br>니다. 또한 본 증권은 정부의 승인 또는 보증을 받거나 타 금융기관으<br>로부터 보증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의 투자로 인한 손익은 전부 투자<br>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본 증권은 거래소 등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본 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를하는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만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환금성 위험         | - 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하에 만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신고서에서 기재된 만기 전 상환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만기 전 상환이 제한되는 제반 상황 및 만기 전 상환에 따른 상환금액 결정구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                | -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본 증권의 상환 및 발행회사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상환금액이 본 증권의 최초발행가액보다 큰 경우그 차액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                | -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br>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파생결합증권(<br>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세제 및 법률상<br>위험 | -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   |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 는 모든 소득(본 증권의 상환 및 발행회사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     | -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투자하여야 합니다.   |
|     | -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확인하여야 합니다.   |

##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인 삼성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 EUROSTOXX50 지수

| 항 목          | 내 용   |
|--------------|---|
| (1) 개요       | 다우존스 유로 STOXX 50주가지수(Dow Jones EURO STOXX 50 Price Index)는 유럽경제통화동맹(EMU)에 소속된 유럽 국가들의 50개 우량주 종목을 대상으로 한 시가총액 가중지수로서 지수 산출시 유동주식수를 사용합니다. 해당 지수는 1991년 12월 31일을 기준값 1000으로 산출하며 유동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2) 지수산출기관   | 스톡스 사(Stoxx Limited) 또는 그 승계기관  |
| (3) 구성종목 거래소 | Eurex Exchange Deutschland 또는 그 승계기관  |
| (4) 정보취득방법   | 삼성증권 HTS(Home Trading System) 3650 화면 및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 Eurex 홈페이지(https://www.stoxx.com/index-details?symbol=SX5E) 등  |

#### (5) 최근 20년간 가격변동추이

가. 대상기간 :1996년 12월 02일 ~ 2019년 11월 26일

나. 기간 중 최고치(종가기준) : 5464.43 (2000년 03월 06일)

다. 기간 중 최저치(종가기준): 1761.6 (1996년 12월 13일)



주가추이(EUROSTOXX50)

주1)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추이와 본 증권의 수익구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 NKY225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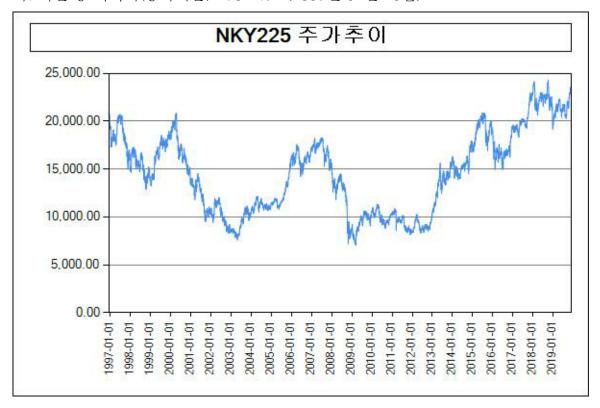
| 항 목          | 내 용   |  |  |  |  |  |  |  |
|--------------|---|--|--|--|--|--|--|--|
| (1) 개요       | 니께이평균지수 225는 일본을 대표하는 주가지수로 1950년 9월 7일부터 일본경제신문사가 발표, 제공하는 지수입니다. 지수산출의 대상이 되는 225 종목은 동경증권거래소(TSE)의 1부 소속 종목을 가운데서 유동성, 업종별 대표성등을 고려하여 선별되며, 소위 다우식 평균법에 의해 산출되는 지수입니다. 1986년 9월 3일일본의 주가지수로서는 최초로 싱가포르거래소(SIMEX)에서 선물거래 대상이 되었으며, 이 후 오사카증권거래소(OSE), CME 등에서도 선물 및 옵션거래가 시작되었으며, 2001년 7월에는 상장수익증권(ETF)의 상장, 파생상품 거래의 확대 등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  |  |  |  |  |  |  |
| (2) 지수산출기관   | 일본경제신문사 또는 그 승계기관   |  |  |  |  |  |  |  |
| (3) 구성종목 거래소 | 동경증권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  |  |  |  |  |  |  |
| (4) 정보취득방법   | 삼성증권 HTS(Home Trading System) 3650 화면 및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 동경증권거래소 홈페이지(http://www.   |  |  |  |  |  |  |  |

| 항 목 | 내 용          |
|-----|--------------|
|     | tse.or.jp) 등 |

#### (5) 최근 20년간 가격변동추이

가. 대상기간 :1996년 12월 02일 ~ 2019년 11월 26일

나. 기간 중 최고치(종가기준): 24270.62 (2018년 10월 02일) 다. 기간 중 최저치(종가기준): 7054.98 (2009년 03월 10일)



주가추이(NKY225)

주1)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추이와 본 증권의 수익구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 S&P500 지수

| 항목     | 내 용                                    |
|--------|--|
|        | S&P500 지수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500개 주식의 시가총액  |
|        | 가중평균지수입니다. 해당 지수는 전체 주요 업종을 대표하는 50    |
| (1) 개요 | 0개 주식의 종합 시가총액의 변동을 통해 광범위한 미국경제의 실    |
|        | 적을 측정할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수는 1941~194 |

| 항 목          | 내 용  |  |  |  |  |  |  |
|--------------|--|--|--|--|--|--|--|
|              | 3년 기준기간을 기준치 10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  |  |  |  |  |
| (2) 지수산출기관   | 미국 스탠다드앤푸어스 사(Standard & Poor's) 또는 그 승계기관   |  |  |  |  |  |  |
| (3) 구성종목 거래소 |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  |  |  |  |  |  |
| (4) 정보취득방법   | 삼성증권 HTS(Home Trading System) 3650 화면 및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 뉴욕증권거래소 홈페이지(http://www.nyse.com) 등 |  |  |  |  |  |  |

#### (5) 최근 20년간 가격변동추이

가. 대상기간 :1996년 12월 02일 ~ 2019년 11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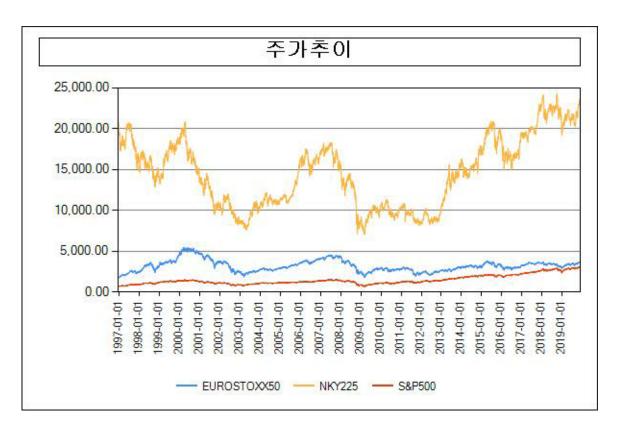
나. 기간 중 최고치(종가기준) : 3140.52 (2019년 11월 26일)

다. 기간 중 최저치(종가기준): 676.53 (2009년 03월 09일)



주가추이(S&P500)

주1)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추이와 본 증권의 수익구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S&P 500 지수(이하 "본 지수"라 합니다)는 S&P Dow Jones Indices LLC 또는 관계 사 (이하 "SPDJI"라 합니다)의 상품이며 삼성증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습니다. S tandard & Poor's 와 S&P는 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이하 "S&P"라 합 니다)의 등록상표입니다. Dow Jones는 Dow Jones Trademark Holdings LLC (이하 "Dow Jones"라 합니다)의 등록상표입니다. 이 상표는 SPDJI에 사용허가 되었으며 삼성증권 상 품(이하 "본 상품"이하 합니다)에 사용허가 되었습니다. 본 상품은 SPDJI, Dow Jones, S &P. 그 관계사가 스폰서하거나, 추천하거나, 판매하거나 프로모션하는 것이 아닙니다. S &P Dow Jones Indices는 본 지수가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의 적부 또는 일반 적인 주식시장의 성과를 추적하는 능력과 관련하여 본 상품의 투자자 또는 일반인에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보장 또는 진술도 하지 아니합니다. S&P Dow Jones Indi ces와 본 지수 사용자와의 유일한 관계는 S&P Dow Jones Indices의 지수, 특정 등록상 표와 상호를 라이선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지수는 삼성증권 또는 본 상품과 무관하게 S&P Dow Jones Indices에 의해 결정, 구성 그리고 계산됩니다. S&P Dow Jones Indices 는 본 지수를 결정, 구성, 계산함에 있어 삼성증권 또는 본 상품의 투자자의 필요를 고려 할 의무가 없습니다. S&P Dow Jones Indices는 본 상품의 가격, 수량 또는 본 상품의 발 행. 판매의 시기 또는 본 상품의 환매. 상환 등의 상황에서 본 상품을 현금으로 환산하는 산식의 결정 또는 계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S&P Dow Jone s Indices는 본 상품의 관리. 마케팅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지수를 기초로 하는 투자상품들이 정확하게 지수의 성과를 추종할 것이라 고 또는 양의 투자수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S&P Dow Jones Indices LLC는 투자자문 회사가 아닙니다. 지수에 증권을 편입하는 것은 해당 증권의 매수, 매도, 보유에 대한 S&P Dow Jones Indices의 추천이 아니며 이것이 투자 자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P Dow Jones Indices는 본 지수 또는 배포된 자료, 구두 또는 서면 의사소 통(전자기기를 통한 의사소통 포함)의 적합성, 정확성, 시의적절성 또는 완벽성에 대하 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S&P Dow Jones Indices는 어떠한 피해나 오류, 누락 또는 지연에 관한 책임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S&P Dow Jones Indices는 특정 목적 또는 사용에의 시 장성이나 적합성 또는 삼성증권이나 본 상품의 투자자. 본 지수 또는 배포된 데이터를 사 용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 얻을 결과에 관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상기 사항에 더하여, S&P Dow Jones Indices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익손실, 거래손실, 시간 또는 영업권의 손실을 포함한 간접적, 특별적, 우발적, 징벌적 또는 결과적인 손해 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는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무과실책임 등을 통해 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공지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S&P Dow Jones Indices와 삼성증권 사이에 체결된 어떠한 협정 또는 협의에는 S&P Dow Jon es Indices의 라이선스 보유자 외에 다른 제3의 수혜자가 없습니다.



주가추이

## Ⅴ. 인수인의 의견

-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직접모집이므로 주관회사가 없습니다.
- 증권에 대한 분석 등은 발행회사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 Ⅵ. 자금의 사용목적

####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금 5,000,000,000 원

(2) 발행 제비용 내역

1) 공모예정가 : 금 5,000,000,000 원

2) 발행제비용: 미확정

####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삼성증권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일부 또는 전체를 기초자산 거래,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등의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 Ⅷ.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 가.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2019.10.31 현재)

(단위 : 억원)

|       |        |    | 주가연계파상     |         |        |        |       |        |           | 기타파생결합사채         |     |      |      |                |       | 합계      |        |      |       |              |        |        |
|-------|--------|----|------------|---------|--------|--------|-------|--------|-----------|------------------|-----|------|------|----------------|-------|---------|--------|------|-------|--------------|--------|--------|
| 구분    |        |    | 발행총계       | 20/1/11 |        | 발행잔액   |       |        | 발행총2      |                  |     | 발행잔약 | Н    |                | 발행총계  | 26/1/11 |        | 발행잔액 |       |              | 발행총계   |        |
| ' ' ' |        |    | 공모         | 사모      | Эl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Эl  | 공모   | 사모   | Я              | 공모    | 사모      | Э      | 공모   | 사모    | Я            | 공모     | 사모     |
|       |        | 건  | 94         | 15      | 109    | - 0-   | _     | -      | 01        | 시工               | 211 | 0-   | ///- | 211            | 111   | 59      | 170    |      | 9     | 9            | 205    | 74     |
|       | 2016년  | _  |            |         |        |        |       |        |           |                  |     |      |      |                |       |         | 1      |      |       |              |        |        |
|       |        | 금액 | 897        | 735     | 1,632  | -      | -     | -      |           |                  |     |      |      | -              | 1,051 | 5,442   | 6,493  | -    | 2,113 | 2,113        | 1,948  | 6,177  |
|       | 2017년  | 건  | 73         | 5       | 78     | 5      | -     | 5      |           |                  |     |      |      |                | 86    | 49      | 135    | _    | 5     | 5            | 159    | 54     |
|       |        | 금액 | 4,375      | 124     | 4,499  | 301    | -     | 301    |           |                  |     |      |      |                | 1,376 | 5,732   | 7,109  | -    | 1,800 | 1,800        | 5,751  | 5,856  |
| 원금지급  | 2018년  | 건  | 132        | 51      | 183    | 41     | 10    | 51     |           |                  |     |      |      |                | 75    | 52      | 127    | 9    | 15    | 24           | 207    | 103    |
| 건급시급  | 2010년  | 금액 | 7,441      | 2,187   | 9,628  | 4,609  | 230   | 4,839  |           |                  |     |      |      |                | 782   | 3,540   | 4,321  | 71   | 1,704 | 1,774        | 8,223  | 5,726  |
|       | 201017 | 건  | 169        | 134     | 303    | 137    | 104   | 241    |           |                  |     |      |      |                | 44    | 40      | 84     | 38   | 39    | 77           | 213    | 174    |
|       | 2019년  | 금액 | 7,506      | 5,468   | 12,974 | 5,967  | 4,328 | 10,295 |           |                  |     |      |      |                | 128   | 3,446   | 3,574  | 116  | 3,440 | 3,556        | 7,634  | 8,914  |
|       |        | 건  | 468        | 205     | 673    | 183    | 114   | 297    | -         | -                | _   | _    | _    | _              | 316   | 200     | 516    | 47   | 68    | 115          | 784    | 405    |
|       | 합계     | 금액 | 20,219     | 8,514   | 28,733 | 10,877 | 4,558 | 15,435 | _         | _                | _   | _    | -    | -              | 3,337 | 18,160  | 21,497 | 187  | 9,057 | 9,243        | 23,556 | 26,673 |
| -     |        |    |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 |         |        |        |       |        |           | 주식워런트증권 기타파생결합증권 |     |      |      |                |       |         |        |      | 합계    | <del>-</del> |        |        |
| 구분    |        |    | <br>발행총계   |         |        | 발행잔액   |       |        | 발행총계 발행잔액 |                  |     |      |      | 발행총계           |       |         | 발행잔액   |      | 발행총계  |              |        |        |
|       |        |    | 공모         | 사모      | Я      | 공모     | 사모    | Эl     | 공모        | 사모               | Эl  | 공모   | 사모   | Я              | 공모    | 사모      | Я      | 공모   | 사모    | ĴЛ           | 공모     | 사모     |
|       |        | 거  | 1.100      | 887     | 1.987  | -      | 4     | 4      | _         | _                | _   | _    | _    | _              | 102   | 310     | 412    | -    | 3     | 3            | 1,202  | 1.197  |
|       | 2016년  | 금액 | 30.336     | 11.933  | 42.269 | _      | 5     | 5      | _         | _                | _   | _    | _    | <u> </u>       | 947   | 24.974  | 25.920 | _    | 550   | 550          | 31,283 | 36,906 |
| }     |        | 건  | 1,218      | 1.432   | 2,650  | 16     | 131   | 147    | _         | _                |     | _    | _    | <del>  _</del> | 78    | 388     | 466    | _    |       | _            | 1,296  | 1,820  |
|       | 2017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액 | 57,930     | 27,988  | 85,918 | 242    | 1,212 | 1,454  | -         | -                | -   | -    | -    | -              | 708   | 27,059  | 27,767 | -    | -     | _            | 58,638 | 55,048 |
| 원금비보장 | 2018년  | 건  | 1,659      | 927     | 2,586  | 275    | 389   | 664    | _         | 9                | 9   | _    | 9    | 9              | 84    | 274     | 358    | 33   | 24    | 57           | 1,743  | 1,210  |
|       | 20.00  | 금액 | 67,091     | 14,848  | 81,939 | 6,576  | 5,569 | 12,144 | _         | 170              | 170 | _    | 170  | 170            | 482   | 19,281  | 19,763 | 160  | 1,178 | 1,338        | 67,574 | 34,2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년 | 건  | 1,629   | 652    | 2,281   | 1,176  | 484    | 1,660  | - | -   | i   | 1 | _   | _   | 138   | 386     | 524     | 112   | 150    | 262    | 1,767   | 1,038   |
|    |       | 금액 | 79,708  | 7,566  | 87,274  | 51,715 | 4,417  | 56,132 | _ | -   | 1   | - | -   | _   | 2,904 | 17,546  | 20,450  | 2,702 | 6,549  | 9,251  | 82,612  | 25,111  |
|    | 합계    | 건  | 5,606   | 3,898  | 9,504   | 1,467  | 1,008  | 2,475  | - | 9   | 9   | 1 | 9   | 9   | 402   | 1,358   | 1,760   | 145   | 177    | 322    | 6,008   | 5,265   |
|    |       | 금액 | 235,065 | 62,335 | 297,401 | 58,532 | 11,203 | 69,735 | _ | 170 | 170 | 1 | 170 | 170 | 5,041 | 88,860  | 93,901  | 2,862 | 8,277  | 11,140 | 240,106 | 151,365 |
| 합계 | 2016년 | 건  | 1,194   | 902    | 2,096   | -      | 4      | 4      | - | -   | -   | - | -   | -   | 213   | 369     | 582     | -     | 12     | 12     | 1,407   | 1,271   |
|    |       | 금액 | 31,233  | 12,668 | 43,901  | -      | 5      | 5      | _ | -   | 1   | 1 | _   | _   | 1,998 | 30,415  | 32,413  | -     | 2,663  | 2,663  | 33,231  | 43,083  |
|    | 2017년 | 건  | 1,291   | 1,437  | 2,728   | 21     | 131    | 152    | - | -   | -   | _ | -   | -   | 164   | 437     | 601     | -     | 5      | 5      | 1,455   | 1,874   |
|    |       | 금액 | 62,305  | 28,112 | 90,417  | 542    | 1,212  | 1,755  | _ | -   | -   | - | _   | _   | 2,084 | 32,792  | 34,876  | -     | 1,800  | 1,800  | 64,389  | 60,904  |
|    | 2018년 | 건  | 1,791   | 978    | 2,769   | 316    | 399    | 715    | - | 9   | 9   | - | 9   | 9   | 159   | 326     | 485     | 42    | 39     | 81     | 1,950   | 1,313   |
|    |       | 금액 | 74,532  | 17,035 | 91,567  | 11,185 | 5,799  | 16,983 | - | 170 | 170 | - | 170 | 170 | 1,264 | 22,821  | 24,085  | 231   | 2,882  | 3,113  | 75,796  | 40,025  |
|    | 2019년 | 건  | 1,798   | 786    | 2,584   | 1,313  | 588    | 1,901  | - | -   | 1   | - | -   | _   | 182   | 426     | 608     | 150   | 189    | 339    | 1,980   | 1,212   |
|    |       | 금액 | 87,214  | 13,034 | 100,248 | 57,682 | 8,745  | 66,427 | - | -   | -   | 1 | -   | _   | 3,032 | 20,992  | 24,023  | 2,818 | 9,989  | 12,808 | 90,246  | 34,026  |
|    | 합계    | 건  | 6,074   | 4,103  | 10,177  | 1,650  | 1,122  | 2,772  | - | 9   | 9   | _ | 9   | 9   | 718   | 1,558   | 2,276   | 192   | 245    | 437    | 6,792   | 5,670   |
|    |       | 금액 | 255,285 | 70,849 | 326,133 | 69,410 | 15,761 | 85,171 | - | 170 | 170 | - | 170 | 170 | 8,378 | 107,019 | 115,398 | 3,049 | 17,334 | 20,383 | 263,663 | 178,038 |

#### 나. 신용환산액(2019.06.28 기준)(단위 : 원)

| 거래상대방명 | ELS             | ELW | 기타파생상품          | 계               |  |  |
|--------|-----------------|-----|-----------------|-----------------|--|--|
| 기타     | 331,279,416,316 | 0   | 166,488,074,926 | 497,767,491,241 |  |  |
| 합계     | 331,279,416,316 | 0   | 166,488,074,926 | 497,767,491,241 |  |  |

- 1) 신용환산액 산식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 신용환산액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시가평가액은 당사에서 평가한 금액을
- 기준으로 산정되며, 신용환산율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별표 5>에 의함.
- 2)신용환산액: 거래상대방별 거래금액의 시가 평가한 현재의 대체비용[당해 계약의 미실현이익(+) 및 손실(-) 금액]에 잔존계약기간중의 잠재적인 위험액(명목원금에 거

래의 종류 및 잔존기간에 따라 결정된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신용환산액을 구함.

- 3) 'ELS+ELW+DLS' 신용환산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 상대방만 표시하고 나머지 신용환산액은 기타로 합산하여 기재
- 4) 자기자본 금액은 19년 06월 말 기준임

#### 2. 세금부과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본 증권의 상환 및 발행회사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상환금액이 본 증권의 최초발행가액보다 큰 경우 그차액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본 증권의 상환 및 발행회사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